제2호. 土地외의 課稅對象에 대한 時價標準額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去來價格, 輸入價格, 新築·建造·製造價格 등을 참작하여 정한 基準價格에 종류·構造·用途· 經過年數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課稅對象別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月 1日 현재의 價額. 다만, 時價標準額이 결정되지 아니한 課稅對象의 경우에는 納稅義務成立日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價額을 時價標準額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時價標準額이 基準價格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時價標準額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6260호, 2000. 2. 3) 부칙에서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적용례) 1999年 12月 23日부터 이 法 施行전까지 土地외의 取得稅·登錄稅의 課稅對象物을 취득한 경우로서 時價標準額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11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결정한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6260호, 2000. 12. 29) 부칙 제3항을 개정하여 쟁송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토록 보완하였다.

③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헌법 불합치된 지방세법 법률조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을 2000. 12. 31까지 개정하되,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재 결정이후 개정전까지는 그 법률의 적용을 「중지」 토록 함으로서 별도의 보완대책없이 법률적용을 단순 중지할 경우 건물과표 및 차량 등 기타물건 과표를 산정·적용할 수 없어 지방세법 개정전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 부과·징수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그 자체가 완결된 최종판단이 아니고 그 위헌적 상태의 제거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입법자에게 미루고,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을 하게 하는 결정이므로 법률 개정전까지는 비록 그 법률 적용이 중지하더라도 신법 개정으로 소급적용 된다. 즉, 헌법불합치결정당시 쟁송계류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요소가 제거된 구법